

실전 글 읽기 (2021학년도 수능 법 지문) 먼저 읽으면 좋을 지문 - 2019학년도 수능 법 지문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그렇구나.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 하고, 특정 행위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

-> 아 위에 말했던 특정 행위를 ‘급부’라고 하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나한테 채무가 있구나.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 음? 위에서 특정 행위를 급부라고 알려줬는데 여기서도 급부라고 쓴 걸 보면 이 지문에선 급부=특정 행위겠네,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 여긴 뭐 당연하고 재화나 서비스 제공은 그러려니,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는 건 굳이 깊게 생각안하고 예외정도니까 체크해두자 (기출을 분석할 때 보조사를 통한 예외 이런 건 자주 출제 됐으니까)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 이 지문에서 권리라 하면 앞에 채권이랑 연관된 것이겠다.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권리가 중요할까?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 권력이 중요할까? 앞에서 채권을 얘기했으니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하는 권리가 이 지문에선 조금 더 중요할 것 같다.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 뭐지? 이건 일상생활 조금만 생각해도 당연한 거다. 여기서 중요한건 붕 뜨지 말고 다음 문장 읽으면서 이 문장 왜 쓰였지? 생각하는 거다.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 아 이거 계약 관련된 지문이라 앞에서 떡밥 던진 거구나.(붕 뜨지 말고 최대한 앞이랑 붙여 읽기) 급부가 뭐 였지? ㅇㅋ확인 (기억이 안 나면 위에 다녀오기)

이를 위해 ‘예약’이 활용된다.

-> 아 이 지문에선 계약이랑 예약이랑 다른 거구나. (아예 양립 느낌일지 아니면 약간 겹치는게 있을지는 지문 내려가 읽으면서 확인하면 된다.)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

-> 뭐가 다른 거지?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 여기서 1차 뇌절이 올 수 있다. 나 같은 경우는 일단 옆에 정리해둔다. 돈을 미리 지불 - 승차권 구입 (예약 아닌 계약)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계약이란 예약이 아예 다른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겹침 or 포함 관계인걸 눈치 챘으면 좋았다.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 뇌절이 온다고 급하게 읽지 말고 차분차분 한 문장 뜻을 이해하자, 여기서 (이해하는 과정 or 정리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느려지는 건 당연한 거다. 이게 왜 두려워함?

자기가 친숙한 걸로 예시를 들며 생각해도 좋다. 내가 돈이 급해서 A에게 2021년 1월 29일에 아이폰을 중고로 50만원에 판다고 하자. 그럼 내가 A와 1월 29일에 하기로 한 내용(아이폰을 50만원에 파는 것)은 본계약 이고 팔기로 약속한 것은 예약 이정도 겠네? 이정도 못할거라고 두려워 하지말자 연습하면 할만하다.

예약은 예약상 관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예약상 관리자? 말이 어렵다고 두려워 하지마라 예약하는 사람이겠지
여기 문단에 A쳐져 있으니까 문제 하나 출제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관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 뭘 개소리지? 두 번정도 읽었는데 이해가 안된다.

1. 그럼 이 내용가지곤 깊게 안 물어 보거나
2. 다음 문장에서 예시 들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줄 거다

회사의 급식 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 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한다.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

-> 이거 예시들면 개삽잖아? a,b,c,d,e가 지원하고 회사가 d를 뽑았다고 d에게 통지/ 여기가 예약 성립시점 / 이때 d가 본계약 체결 요청하면 회사가 응무를 져야함 << 이게 위에 말했던 예약상 관리자(회사) 본계약 성립요구에 대해 상대방(d)이 승낙하는 것이네 의문점이 해결 됐다.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 아 일단 하나가 끝났고 아예 다른건지 미세하게 다른건지는 읽으면서 판단하자.

이 경우 예약상 관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 이제는 쉽잖아? 회사가 d한테 통지만 하면 본계약 성립이라는거네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 계약이 성립하므로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한다.

-> 예시까지 들어주네 이젠 편하게 읽으면 된다.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 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예약의 유형에 따라 발생 문제의 양상이 다르다.

-> 단어가 어렵다고 쫓지말자, 위에서 잘 읽어 왔잖아 아마 문제 생겼으니 해결방안이나 과정 알려주겠지< 이런거 구조독해라고 신격화 or 무시하지말고 도구라고 생각하자, 본인이 이거가지고 단순히 일치 대응만 하면 쓰레기 도구, 이걸 도움받아서 더 잘 읽으면 최고의 도구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 수능 당일엔 이런 문장은 막힘없이 읽힐정도로 연습하는게 좋다. 지실수로 피해 입혔으면? 불이행 책임 져야지

참고로 법 지문에서 과실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는데 나는 그냥 과한실수 정도로 이해한다.

사전에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주의나 태만 따위에서 비롯된 잘못이나 허물.

2

부주의로 인하여, 어떤 결과의 발생을 미리 내다보지 못한 일.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이 바뀌는데 원래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채권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하는 손해 배상 채무로 바뀐다.

만약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예약상 권리자는 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정말 당연하다. 다만 여기서, 예약상 권리자? 위에서 나왔던 단어 같은데하고 위에 갔다가 오면 좋다.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지기 때문이다.

-> 그냥 인정인정~ 그러고 읽자 문장의 무게가 별로 없다.

다만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 여기서 집중력 흐트러 지지말고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한명이라도 손해배상 하면된다 이 정도 체크하자.